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90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이현승
강대식 · 김예지 · 진종오
고동진 · 김대식 · 권영진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5항 신설 및 제33조의2제1항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은 전체 근로자 총수,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상황과 고용비율 준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전체 근로자 총수,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상황과 고용비율 준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우선고용 실적의 보고 및 공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결과와 제33조의3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과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고용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은 <u>전체 근로자 총수,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상황과 고용비율 준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u>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 ----- ----- ----- ----- ----- ----- ----. <u>이 경우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전체 근로자 총수,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상황과 고용비율 준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u>
② · ③ (생략) <u><신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우선고용 실적의 보고 및 공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결과와 제33조의3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과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고용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